

##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4.18.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나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 개선 (연가수혜범위 확대)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 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도록 함  
(안 제20조제2항)
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  
(20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##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조제목 "토요일근무제"를 "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"로하고, 동조제1항중 "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"를 "소속공무원을 원1회 동 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"로 하며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및제3항을 각각 제3항및제4항으로 하며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1)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- (2)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식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원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식일수가 15일이상은 1원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textcircled{o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-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헤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 ①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은 토요일 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선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전일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) ① ----- ----- ---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
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.</p>
< 신 설 >	<p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 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율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 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기 소속점이 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 미만은 철사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-</li> <li>    12월 - 당해연도 휴식기간(월)</li> <li>        12월</li> <li>    × 당해연도 연가일수</li> </ul>
(2) 실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치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.	(3)(현행 제2항과 같음)
(3)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기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	(4)(현행 세3항과 같음)
제22조(공가) (생 략) 5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	<p>제22조(공가)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p>